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3

발의연월일: 2020. 9. 3.

발 의 자:정태호·홍성국·임호선

이탄희 · 앙이원영 · 김영배

최혜영·허 영·한병도

송갑석 · 김경협 · 이동주

유기홍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깎는 행위와 더불어 기술탈취는 하도 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써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 기술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기업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의욕저하와 성장정체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 나.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금지조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3 신설).
- 다. 기술 유용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 장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 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의4 신설).
- 라.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 마. 기술 유용 행위의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3 신설).
- 바.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안 제40조의4 신설).
- 사.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3조).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기술 유용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이하 "유용대상 기술자료"라 한다)를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나.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 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제2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및 해당 임직원의 수탁기업에 대한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약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어야 한다.

-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하여 기술 유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손 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유용 행위 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4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유용 행위의 구체 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을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3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를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5조의3에"로 한다.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2항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한다.

③ 위탁기업은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3을 제40조의5로 하고,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3(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이익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②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등의 양도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유용대상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액이 본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40조의4(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기술 유용 행위"란 다음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			
	<u>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u>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이하 "유용대상			
	기술자료"라 한다)를 부정			
	한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			
	<u>위</u>			
	나. 유용대상 기술자료를 제3			
	자에게 공개(비밀을 유지			
	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u>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u>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제25조(준수사항) ①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 <삭 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 14. (생략)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 <삭 제>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 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 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 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 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 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신 설>

13. •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위탁기업은 수탁 기업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 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신 설>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및 해당 임직원의 수탁기업에 대한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약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어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하여 기술 유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40조의2제3항에 따 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 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 술 유용 행위를 부인하는 당사 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

제27조(수탁 · 위탁기업 간 불공 제27조(수탁 · 위탁기업 간 불공 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 정거래행위 개선) ① ------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 업 간의 수탁 위탁거래 과정 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 조,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또는 제25조제1항을 이행하고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에 관하여는 제40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4제3항 중 "침해의 증 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 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 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 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유 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3을-----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 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 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 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 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경우
 - 2. ~ 4. (생략)
 - ②·③ (생 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②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u>,</u>
1. <u>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u>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원은 <u>제2항의</u>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④ (생 략)

<신 설>

③ 위탁기업은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④</u> -----<u>제2항 및 제3항의</u>---

1. ~ 7.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0조의3(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탁기업
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탁 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등의 양도 수량에 수탁 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

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 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 으로 할 수 있다.

③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유용대상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액이 본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 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 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4(자료의 제출) ① 법원

<신 설>

은 제40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 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 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 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의제) (생 략)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 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 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 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 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 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 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 제40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40조의3과 같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④ (생 략)

_	_	_	_	_	

- 1.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
- 1. (현행과 같음)
- 2.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 ④ (현행과 같음)